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20)

명의대여자의 책임

한두환 변호사



한두환
관악법률사무소
변호사
today-we@hanmail.net



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고, [명의동물병원 강남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정간호씨 역시 김명의 수의사에게 밀린 월급 400 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김명의 수의사는 박임대씨와 정간호씨에게 임차료와 월급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까?

[명의동물병원]의 상호를 타인이 몰래 사용하는 경우는 김명의 수의사는 타인이 사용한 상호와 연관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 (제14회 칼럼 참조). 하지만 김명의 수의사가 [명의동물병원]의 상호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책임 내용이 달라진다.

김명의 수의사는 진료를 잘하는 곳으로 명성을 얻으며 [명의동물병원]을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었다. 김명의 수의사와 절친한 친구인 이동기 수의사는 김명의 수의사에게 자신이 새로 개원하는 동물병원에 [명의동물병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명의동물병원]이라는 상호를 쓰면 보호자들에게 보다 신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김명의 수의사는 친구의 부탁이므로 이를 허락해 주는 대신, 다만 동물병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신은 책임을 면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동기 수의사는 [명의동물병원 강남지점]을 개원하였지만 이내 운영난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이동기 수의사는 병원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도 밀린 채 [명의동물병원 강남지점]을 폐업하게 되었다.

이동기 수의사에게 상가를 임대해 준 박임대씨는 이동기 수의사가 아닌 김명의 수의사에게 밀린 상가 임차료 1,000만원

이 달라진다.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를 빌린 명의차용자가 그 명의를 사용하면서 거래를 하고 그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명의대여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의 수의사는 명의대여자, 이동기 수의사는 명의차용자이며, 박임대씨는 이동기 수의사와 상가임대차 계약의 거래를 한 제3자이고, 정간호씨는 [명의동물병원 강남지점]에서 근무하는 고용 계약의 거래를 한 제3자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이동기 수의사와 거래한 제3자인 박임대씨, 정간호씨에게도 일응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3자의 신뢰

다만 위의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는 명의차용자와 거래를 하면서도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라고 오인하였어야 한다.

즉, 박임대씨는 이동기 수의사와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명의동물병원 강남지점]의 주인은 이동기 수의사가 아니라 김명의 수의사라고 오인하였어야 한다. 정간호씨도 자신이 근무하는 [명의동물병원 강남지점]의 영업주는 이동기 수의사가 아니라 김명의 수의사라고 오인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박임대씨의 경우, 자신의 상가에 들어오는 동물병원이 [명의동물병원 강남지점]이므로 김명의 수의사가 영업주라고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일 김명의 수의사가 박임대씨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동기 수의사가 자신이 [명의동물병원 강남지점]의 영업주라고 박임대씨에게 밝혔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런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박임대씨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정간호씨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의 영업주를 오인하였다는 것은 인정되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정간호씨는 [명의동물병원 강남지점]의 영업주를 김명의 수의사로 오인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김명의 수의사에게 밀린 월급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정간호씨는 이동기 수의사에게는 월급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김명의 수의사의 책임의 범위

위 「상법」 제24조에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박임대씨와 같은 제3자는 김명의 수의사와 이동기 수의사 중 한명을 선택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박임대씨는 김명의 수의사와 이동기 수의사 모두에게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임대씨는 김명의 수의사에게만 청구하였으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1,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김명의 수의사와 이동기 수의사는 명의를 대여할 때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김명의 수의사는 책임이 없다는 약정을 하였다.

연대책임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423조는 [어느 연대책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책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김명의 수의사와 이동기 수의사 사이의 위 약정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 약정을 박임대씨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박임대씨에게는 1,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여야 하며, 그 후 이동기씨에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명의대여의 중요성

이름에는 한 사람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녹아있다. 법적으로도 명의를 대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용과 그에 따른 책임까지 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